

업체명 (현장명)	○○건설 △△건축공사	담당자 (공사담당자)	검토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근로자대표 (작업반장 등)	승인자 (현장소장)
작성일자 (개정일자)	'22.2.1. ('23.5.10)				

목적	• 근로자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사망사고 제로 실현	방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상-중-하)
----	-------------------------------------	----	--------------------------

조직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직위: _____ 성명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직위: _____ 성명 근로자(작업반장) 근로자(작업반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현장소장)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공사담당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공종별 협력업체 소장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언,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사전준비

- ①예정 공정표(원·하청 공사담당자 작성) 확인 및 공종(단위작업) 분류
- ②동종 유사업종 재해, 아차사고 사례,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에 주로 살펴볼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검토

② 유해·위험요인 파악

- ①노사 합동 사업장 순회점검, ②근로자 제안제도(제안함·TBM시 건의 등)
- ③아차사고 제보사례, ④안전보건공단 공종별 사망사고 핵심위험요인(SIF)표 등을 활용하여 예정 공정표에 따른 공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 사전준비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③ 위험성 결정

- ①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위험성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관리할 유해·위험요인을 선정
- ②근로자의 경험과 재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위험성 결정
- ③'상'과 '중'등급은 중점관리, '하'등급은 일상 관리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	허용 가능 여부
상	사고 발생 시 사망 또는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위험	허용 불가능
중	사고 발생 시 요양이 필요한 위험 (아차사고 포함)	허용 불가능
하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허용 가능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①실천가능한 위험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지 계획 수립
- ①-1. '상'등급 대책: 공법변경→작업변경→안전시설물→개인보호구* 순
- ①-2. '중'등급 대책: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위험저감 교육 등
- ①-3 '하'등급 대책: 현재의 위험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관리 수행
* 개인보호구는 위험성 감소의 근본적 대책은 아니며, 보충적으로 활용

⑤ 감소대책 이행·확인

- ①공종별 공사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시 결과를 확인하고 공유
- ②주 단위 원·하청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⑥ 평가결과 공유·교육

- ①[TBM]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 ②[공유]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 ③[교육]매월 정기안전보건교육, 수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시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상시평가 시기별 활동	• (최초평가) 공사 실 착공 후 1개월 이내 착수 • (상시평가) 최초평가 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 실시 * 최초·주기적 위험성평가 시에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나 공정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변동되었다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결정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실시 주기	참여자	세부 내용
	월(月) 1회 매월 ○째주 △요일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파악·대책마련 절차) ① (노·사합동 순회점검) 노·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이때,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에 유의한다. -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 ② (아차사고 검토)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③ (근로자 제안) 근로자들의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언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 ④ (예정공정표 활용)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 파악한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주(週) 매주 □요일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위험성평가 결과 논의·공유, 이행상황 점검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 • 향후 1주간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 • 지난 1주간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 신규/변동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
	일(日) 매일 작업 전	• 현장소장 • 평가담당자 • 공사담당자 • 협력업체소장 • 현장 근로자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작업별 핵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주의·준수사항을 공유/전파한다.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주의·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
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 기록은 별첨 양식을 출력하여 기록하며 매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된 위험성평가 기록은 우리 현장의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라 공사 종료 후 3년 간 보관한다.		

※ 동 실시규정은 사업장(현장) 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 하청으로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 실시규정은 누리집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사업소개 > 건설안전 > 건설안전자료실)